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국토해양부,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

-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임.
  -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으로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이 원하는 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지고 경매시 전세금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됨.
-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은 연간 예상 전세임대사업 전세보증금 총액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하여 포괄 보험가입 후, 사업년도별 개별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 체결시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도록 함.
-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협약하여 체결하고,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액을 보장하게 됨.
  - '09.3.31. 기준 주공의 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은 20,055호이며, 이는 이미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기존 주택 15,755호는 제외한 수치임.
- 이로써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비용 손실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으며,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하여 예산 절감효과도 있게 됨.
- 2년 계약의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, 전세권 설정·말소 비용이 42.3만원인데 반해 보증보험 가입시 20만원으로 절감되며, 20,055호의 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을 환산시 예산절감액은 약 39.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

(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 시행,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건설과, 3/30)